

2004. 3.

수 신 : 제천시의회 의장

제 목 :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을 지방자

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 임 1. 의원서명서 1부.

2.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 1부.

발의자 : 이종호 의원 (인) 증명

외 3인

(찬성자 서명 별첨)

#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

의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이 종호	이 종호	
최종섭	최	
이 재한	<del>이 재한</del>	
이 경완	이 경완	

#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안)

의안 번호	984
----------	-----

발의년월일 : 2005. 3. 22.

발 의 자 : 이종호 의원외 3인

## 1. 제안이유

우리 정부의 거듭된 중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의 날 제정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고 일본 측의 행위를 규탄하며, 정부는 역사적, 지정학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하여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이 조례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온 국민과 함께 독도 수호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고 이를 국회, 청와대등 관계 중앙부처에 송부하며 또한 일본 정부에 의병의 고장인 제천시민의 결연한 의지를 전달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분쇄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 불임 결의문

## 3. 제출처 : 국회, 청와대, 국무총리실,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일본대사관

## 일본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 규탄 결의문(안)

기록의 실체로 수천년 이어온 역사를 날조·왜곡하는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으로도 모자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두고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3월 16일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우리의 영유권을 침탈하고 있다.

시마네현 의회가 억지 주장하는 ‘다케시마의 날’이란 1905년 일제가 독도를 ‘무국적 무인도’로 독단하여 일방적으로 현 부속도서로 편입시키고 이를 두고 100년전 자신의 현 부속도서로 고시한 날을 기념한다는 것이어서 지금까지도 제국주의적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이미 삼국시대인 512년 신라장군 이사부가 울릉도에 상륙하여 우산국을 복속시킨 이래 1500년간 줄곧 한 민족의 영토로 면면히 이어져온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또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일본의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선점의 증거가 아니라 주인있는 남의 땅을 침탈한 침략의 증거가 될 뿐이며 이를 근거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일본정부의 군국주의 망령에서 비롯된 침략적 근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망동이라 할 것이며, 이는 명백히 대한민국에 대한 주권 침해로 영유권을 침탈하려는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제천시의회 의원일동은 전 국민과 함께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우리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사건과 우리의 영유권 침탈야욕을 드러낸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강력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상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손상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를 즉각 폐기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머리숙여 사죄하라.
  
  
  
1.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 의회는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침략적인 근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군국주의적 망령이 재발하지 않도록 굳게 약속하라.
  
  
  
1. 우리는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일본 정부와 시마네현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1. 우리는 정부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다케시마의 날’ 제정조례를 즉각 폐기토록 조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독도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한민족의 숨결이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 강토요 자존심인 독도 영유권 수호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온 국민과 함께 그 뜻을 펼쳐나갈 것을 대내외에 굳은 의지로 천명 한다.

2005년 3월 22일

## 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유영화	부의장 최종섭	의원 이동수
의원 김남원	의원 유경상	의원 김진학
의원 이재환	의원 박종유	의원 민경완
의원 최창규	의원 김성진	의원 윤성열
의원 이용섭	의원 이종호	의원 김기상